**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특약**

공인중개사는 본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 쌍방의 만남을 알선하고, 거래대금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가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추후 공인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가계약이 파기되거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계약자 쌍방은 각자 지급하기로 했던 중개수수료 전액(법정 한도 내 최고액)을 지급해야 한다.